안전한 제품,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

전 민 영 과장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인간에게 있어 '안전'이란 무엇일까?

일찍이 매슬로우(A.H.Maslow)는 욕구5단계 이론을 제시하며 의식주 및 성적욕구 다음으로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안전과 보호, 경제적 안정, 질서 등에 대한 일종의 자기 보전적 욕구인 안전 욕구(safety needs)라고 밝히고 있다.

굳이 매슬로우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안전이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안전을 확보하는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우리생활 속에서는 다양한 위험이 존재하며 이를 모두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한 안전의식 조사에 따르면 '재난 · 안전사고 · 범죄로부터 불안하다'라는 응답이 26.5%에 달한반면 '안전하다'라고 응답은 비율은 21.1%로 오히려 더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많은 국민들이 사회전반에 위험으로부터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런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며 조금이라도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어찌보면 너무나 당연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

안전에는 '생활안전', '교통안전' 등 수많은 정의가 존재하겠지만 오늘은 우리 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제품안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제품안전(product safety)'의 사전적 정의[1]는 결함이 없는 안전한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즉 결함이 없는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제조업체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단어인 것이다. 결함이 없는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이다. 안전하지 못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에게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 달리 제품에 의한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중국 · 베트남 등 개도국 수입제품의 증가, 온라인쇼핑몰 등 유통시장의 다변화, 기술고도화에 따른 융 · 복합 신종제품의 출현 등 다양한 변수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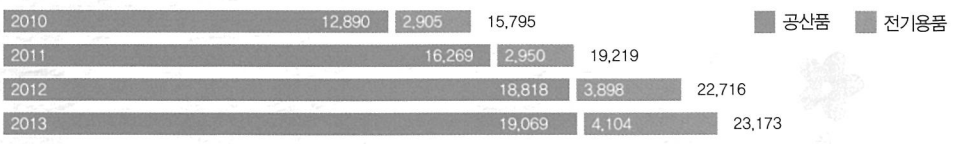

〈제품 위해관련 소비자 신고 현황〉

1) 산업안전대사전, 최상복, 2004.5.10

정부에서 실시하는 '안정성조사' 를 통하여 리콜처분(명령 · 권고) 을 받는 제품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추세이다.

* 리콜건수 : 2011년 105건 → 2012년 157건 → 2013년 209건

또한 제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부족, 사업자의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제품을 안전하게 선택하고 사용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국민 홍보[2]를 진행중이며, 사업자의 제품안전 의식제고 및 리콜에 대한 인식전환을 통해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방안[3]을 실행하고 있다.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안전장치가 마련된 제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는 '인증 제도'를 통하여 사전에 정해진 기준을 통과한 제품만이 시장 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후에는 '안정성조사'를 통하여 제품의 결함이 확인된 경우 '리콜'을 실시, 불량(결함)제품에 대한 유통을 차단하여 안전을 확보 하는 사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이런 안전장치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 · 불량제품에 대한 단속, 온라인 · 오프라인 쇼핑몰 등에 대한 안전모니터링단(시장감시단) 운영 제품안전사고 정보 수집 및 사고조사 등도 확대 · 강화해 나가고 있다.

추진 전략	중점 추진과제
시장감시 강화	① 20대 취약품목 선정 및 중점 관리 ② 리콜처분 확대 및 이행률 제고 ③ 온라인시장 감시 강화 ④ 사고정보 기반의 안전관리체계 확립
제품안전관리 제도 선진화	① 사전인증 품목 단계적 완화 ②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③ 안전기준 제 · 개정 시스템 개선
제품안전 3개 법률 정비	① 제품 소관영역 명확화 ② 사업자의 안전사고 발생시 보고 의무화 ③ 온라인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④ 리콜 행정주체 재정립
소통 · 협력 증진	① 정부 · 사업자 · 소비자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② 사업자 · 소비자의 안전의식 제고 ③ 국제협력 확대

얼마 전 우리는 제2차 제품안전종합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3년간의 제품안전정책방향을 밝혔다.

정부는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현가능한 모든 내용을 담기위해 노력했으며, 지속적으로 이를 실천 국민들의 안전 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제품안전을 위한 인력 · 예산은 미국의 7~9%수준이다. 정부의 역할만으로 우리 생활속에 도사리고 있는 제품사고의 위험을 피할 수는 없다. 제품을 만드는 사업자, 근로자, 제품을 구입하고 사용하는 국민들 모두가 다함께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나서야 될 때이다.

2) 제품안전 지상파 광고, 지하철광고, 홍보브로셔, 안전취약계층 안전주의 자료 등
3) 품목별 제조업체 맞춤형 교육, 리콜처분업체 대상 교육, 리콜 처분확대 및 이행률제고